

신고번호 제 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유통

신고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사업장 소재지)					
해당 생물 정보	학명	원산지	수출국	형태	수량 (단위)	용도
관리방법						
수입·반입시 추가사항	출발국 및 선적항		출발예정일		20 . . .	
	도착국 및 도착항		도착예정일		20 . . .	
	수송방법		항공편 및 선박편명			
사육·재배시 추가사항	사육·재배시설 소재지					
양도·양수시 추가사항	양도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양수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뒤쪽에 계속)

보관시 추가사항	보관시설 소재지	
운반시 추가사항	장소	시기
	운반방법	
유통시 추가사항	매수인 성명	입수경위
	매수인 주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직인

준수사항

- 1. 용도, 수량 등의 신고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신고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부과 사유가 됩니다.